

# 조 례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 목 차

1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4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5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44
6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53
7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60
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6

#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거창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직매장의 개설·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 지원
- 라.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제15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3조에서 거창군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거창군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영세소농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유통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 운영을 규정하였음.

- 제6조에서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밭농업 기반의 효과적 정비와 후계인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은 비교적 지역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운영(안 제4조)
- 나.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안 제5조)
- 다.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안 제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비용: 10백만원
  - 1) 1백만원 × 연 10회
- 나. 거창한마당대축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3,000명
- 다. 축제·행사 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1,000명 × 연 3회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

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3.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사업자의 협력
5.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홍보
6.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중앙협의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

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 6. 14., 제정]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 □ 현행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는 군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과 행복농촌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직거래장터의 운영

**제11조(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또는 법인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운영성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5조(관리비)**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 전화요금 등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규정)**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1. 22.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재운, 김향란, 신미정,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소방기본법」 제2조의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19. ~ 11. 25.(7일간)
    - 나) 예고결과: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최근 3년새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거창군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89면, 충전시설 179기가 설치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 시기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한 상황으로 질식 소화포 등 안전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4조제2항 의안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며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

〈전기자동차 화재등 장비 확충 현황〉

- 2024년 : 화재진압장비 구입 14백만원(2개소\*7백만원)
- 2025년 : 질식소화포 구입 66백만원(33개소\*2백만원)

4.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 「소방기본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거창창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신축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비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8조·제19조)
  - 1) 휴원일, 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 나.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정함(안 제11조의2, 제25조, 별표 3)
-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20조, 별표 1, 별표 2)

라. 입장료 등의 반환을 정함(안 제23조)

마. 창포원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24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5·제18조의8·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9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창포원의 유료화를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 등의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임.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보면 창포원, 주차장, 키즈카페, 자전거, 족욕체험장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입장료 등의 반환 규정도 신설하였음.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1) 유료화에 따른 시설 정비: 울타리, 매표소,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족욕체험장
- 2) 낙동강유역본부에 하천점용료 지출(385,764㎡)
- 3) 근로자 인건비: 매표소 2명, 웰니스센터 3명
- 4)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

나. 관련조문: 입장료 등(안 제20조), 창포원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총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군비	1,585	395	290	295	300	305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시설공사: 총 1,490백만원

가. 2024년 1,380백만원

나. 2025년 110백만원 지출 예정

2. 인건비: 160백만원(38백만원 x 5명)/연

※ 매년 3% 증가 추산

3. 하천점용료: 110백만원(385,764㎡ x 290원)/연

4. 웰니스센터(족욕체험장) 운영비: 15백만원/연

5.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은 필요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 관련 법령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2.]

[중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9로 이동 <2024. 1. 2.>]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2024. 1. 2.>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중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4. 7. 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다. 법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2	50	70	100
라. 법 제18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10	10	10
마. 법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	70	100
바. 법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50	70	100
사.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아.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자.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차.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10	10	10
카.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법 제24조제2항제1호	5	5	5

경우				
다.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	10	10
파.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2항 제1호	5	5	5
하.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2항 제1호	5	5	5
거.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너. 제8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 제24조제2항 제2호	5	5	5
더. 제8조의6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	10	10
러.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5	5	5
며. 제8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1호, 2024. 7. 4., 일부개정]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본조신설 2015. 7. 20.]

[중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 7. 2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3. 5. 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0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9. 22.>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0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를 위하여 읍·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읍면에 기금 지출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함(안 제4조)
  - 1)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 2)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 2) 「지방회계법」 제46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8.~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4조에 불합리한 기금출납원 조항을 개정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을 읍·면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을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3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3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장·면장을 두고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023년 4분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중

<p>제8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p> <p>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p>	<p>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일자리지원 과장</p> <p>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p>	<p>○ 제정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과장을 「○○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인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은 「○○시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위가 아니므로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함</p>
--	--	--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2. 제안이유**

-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1)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2) 정부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11.~10.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에도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서비스 거부(DDoS) 등으로부터 예방조치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 법령

### □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0. 19.>
-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0. 1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9.>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5.>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 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업무
-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다.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

2. 사이버보안 업무

-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조정 업무 [전문개정 2024. 3. 5.]

**제3조의2(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이하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이하 “사이버보안 업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2.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3.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보안대책

②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5.]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제8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보안성 검토 결과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치, 암호모듈 및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이하 “정보보호시스템등”이라 한다)의 도입·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도입·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보호시스템등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시스템등을 직접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보안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항목·절차·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보안관리 수준을 측정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시행일: 2025. 1. 1.] 제10조

**제11조(사이버보안 훈련)**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3. 5.]

**제12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5.>

1. 삭제 <2024. 3. 5.>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점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앙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3조(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점검 등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항목·절차·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3. 5.>

⑤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⑥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⑦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5.> [제목개정 2024. 3. 5.]

**제16조(사고 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위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밖의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3. 5.>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가. 지방직영기업
- 나. 지방공사
-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법제처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소관부처	법령위임 조문 및 주요내용	비고
국가정보원	<p><b>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p> <p>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b>조례</b>로 정하는 기관</p>	<p>국가정보원 사외-662(2024. 6. 27.),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공문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필수 위임사항으로 정정하고 2025년 평가대상 포함 (마련기한: 2024. 12. 31.)</p>

#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 6. 28.)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별표)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36천만원 확보(국50%, 도15%  
군35%)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19.~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조례로 위임한 대행 수수료의 산정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과 동일

하게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나. 관련 조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만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436	436	436	436	436
국비	218	218	218	218	218
도비	65.4	65.4	65.4	65.4	65.4
군비	152.6	152.6	152.6	152.6	152.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436천만원**

**1. 관리대행자 1곳**

**2. 관리대행자의 업무범위**

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행가능한 산림사업**

가.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차.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카. 「수목장립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타.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파.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하. 「사망사업법」에 따른 사망사업

거.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너.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작성자 산림과장 신중호**



## 관련 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26.]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6.]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 진단 보고서
  -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나.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 다.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대여 사용 중임

##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1)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0
  - 2) 건물면적 : 392m<sup>2</sup>

3) 소 유 자 : 거창군

4) 사 업 비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5) 사용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토 지 : 개인 토지(5,500천원/년, 소유주 : 진산 김치성)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1) 사용료 감면(면제) : 5,272,400원

- 건 물 : 105,448,000원(시가표준액)

- 기계설비 : 내구연한 경과

※ 사용료 산출 : 105,448,000원×50/1,000(요일) = 5,272,400원

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주요 사용 내용

1) 신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시험 생산, 기업체 신제품 개발·생산 지원

2) 거창화강석 품질 신뢰도 및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각종 검증, 분석업무 수행

3)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시험서비스 제공 및 기업체 석재 품질시험업무 수행

## 4.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1

나. 사용허가 재산목록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 동기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면제를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대여 사용 중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0



현황사진 :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0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392㎡

세부시설명 면 적(㎡)	공 장	사무실	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	화장실
392	302	26.4	56.1	7.5

○ 기계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수 량	비고	
주 설 비	거 치 대	석재 투입장치	1,120mm × 2,000mm × 800mm	1대	
	세 척 대 (Water shower)	석재에 묻어있는 이물질 을 고압의 물로 세척 하는 장치	1,120mm × 2,000mm × 2,000mm	1대	
	공기분사대 (Air blowing)	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	1,120mm × 2,000mm × 2,000mm	1대	
	건 조 대 (Dryer)	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	1,120mm × 2,000mm × 2,000mm	1대	
	광촉매코팅기 (Photo-catalyst coater)	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	1,120mm × 2,000mm × 2,000mm	1대	
	열처리대 (Heat treatment)	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 시키는 장치	1,120mm × 2,000mm × 2,000mm	1대	
	적 재 대	코팅된 석재를 반출하는 장치	1,120mm × 2,000mm × 800mm	1대	

설비명		용도	규격	수량	비고
공압설비	공기압축기 (Screw compressor)	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하는 장치	AC 380V, 22Kw FAD : 3.13m <sup>3</sup> /min W.P : 9.0kgf/cm <sup>2</sup>	1대	
	냉동식 건조기	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85Nm <sup>3</sup> /min W.P : 9.0kgf/cm <sup>2</sup>	1대	
	흡착식 건조기	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65Nm <sup>3</sup> /min D.P : -25μm 이하	1대	
	에어탱크 (Air tank)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	M.P : 9.9kgf/cm <sup>2</sup> G W.P : 9.0kgf/cm <sup>2</sup> G	1대	
정수설비	고압펌프	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	380V, 1.2Kw S.P : 7kgf/cm <sup>2</sup> C : 24,400kg/h	1대	
	정수설비	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세척수의 이물질 제거하는 장치	마이크로필터: <25μm 압력조정기: 7kgf/cm <sup>2</sup>	1대	
집진및탈취설비	집진기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820mm × 820mm × 1,780mm	1대	
	광반응식 스크러버 (탈취설비)	광촉매 코팅용액 성분 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	1,700mm × 400mm × 1,400mm	1대	
위생시설	변기		양변기 소변기	2개소 1개소	
	세면대		세면대	1개소	
	정화조		1m <sup>3</sup> /1일	1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3. 제1호(토지) 및 제2호(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을 말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0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41.2퍼센트(2023년 32.84퍼센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수도법」 제38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4.02%에 그치고 있고 경상남도 13개 상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은 12위인 상황으로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별표1의 업종별 요금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로 검토됨.

○ 경남 시·군별 상수도 요금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구 분	연간생산량 (천m³)	연간부과량 (천m³)	평균요금 (원/m³)	평균원가 (원/m³)	현실화율 (%)
전 국	6,980,891	6,016,692	727.96	985.38	73.88
경상남도	400,963	312,413	880.11	1,331.28	66.11
통영시	16,538	13,226	1,056.34	1,175.19	89.89
김해시	67,921	53,051	1,017.14	1,245.86	81.64
양산시	46,362	35,929	925.94	1,174.78	78.82
진주시	55,962	40,876	650.75	879.08	74.03
사천시	16,696	13,586	1,051.38	1,497.88	70.19
창원시	119,137	97,288	792.6	1,213.01	65.34
거제시	28,508	22,437	883.26	1,380.06	64
고성군	5,785	4,967	1,107.29	2,201.10	50.31
함안군	9,895	6,852	1,129.95	2,298.91	49.15
창녕군	9,151	7,453	1,046.65	2,153.69	48.6
밀양시	13,285	8,681	967.36	2,616.29	36.97
<b>거창군</b>	<b>6,597</b>	<b>5,508</b>	<b>761.97</b>	<b>2,240.04</b>	<b>34.02</b>
합천군	5,127	2,559	902.7	3,522.88	25.62

※ 경상남도 13개 상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 12위



## 관련 법령

### □ 「수도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2. 제안이유

-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8.6퍼센트(2023년 5.46퍼센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53%에 그치고 있고 경상남도 11개 하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은 10위인 상황으로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로 검토됨.

## ○ 경남 시·군별 하수도 요금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구 분	하수처리량 (천m <sup>3</sup> )	연간부과량 (천m <sup>3</sup> )	평균요금 (원/m <sup>3</sup> )	평균원가 (원/m <sup>3</sup> )	현실화율 (%)
전 국	7,506,199	5,533,448	642.77	1,374.13	46.78
경상남도	362,304	311,925	588.59	1,594.33	36.92
창원시	146,413	122,551	556.74	947.39	58.77
김해시	65,862	53,595	828.23	1,446.75	57.25
양산시	31,229	36,947	658.96	1,371.86	48.03
사천시	16,143	10,099	943.43	3,010.53	31.34
진주시	44,941	42,212	432.16	1,667.66	25.91
밀양시	12,296	8,060	846.49	4,658.11	18.17
거제시	15,587	14,844	421.58	2,707.91	15.57
통영시	10,976	10,917	235.72	1,700.10	13.87
고성군	3,696	2,604	365.67	5,504.06	6.64
<b>거창군</b>	<b>8,922</b>	<b>5,326</b>	<b>207.03</b>	<b>3,741.70</b>	<b>5.53</b>
창녕군	6,238	4,769	241.69	4,533.66	5.33

※ 경상남도 11개 하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 10위

## 관련 법령

### □ 「하수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횟수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6.>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 2. 제안이유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를 위해 기 조성된 『거창스포츠파크 부지의 거창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계획개요

- 1)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일원(양평 근린공원)

## 2) 군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 (공원시설 변경) 당초 79,496m<sup>2</sup>→변경 62,978m<sup>2</sup>(△16,518m<sup>2</sup>)
-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A=16,518m<sup>2</sup>
- (체육시설 신설) 체육시설 신설, A=16,518m<sup>2</sup>

### 나. 변경사유

- 1) 양평근린공원 내 실외골프연습장은 2005년 최초결정 당시 면적 107,275m<sup>2</sup>로 조성 공원조성 계획 상 골프연습장으로 결정되었으나
- 2) 2017년 구역 면적이 79,056m<sup>2</sup>로 축소 변경되어 10만m<sup>2</sup> 미만의 근린공원에서는 세부시설로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 3) 기존 실외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외골프연습장을 공원(양평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로 신설하여 관련 법에 적법하게 개선 하고자 함

### 다. 그간 추진 사항

- 1) 2024. 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 2024. 11.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체육시설사업소 → 도시건축과)

### 라. 향후 추진 계획

- 1) 2024. 11. : 주민의견 청취
- 2) 2024. 12. : 관계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3) 2025. 1. :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거창군 → 경남도)
- 4) 2025. 3.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참고사항

가.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 붙임참조

## 5. 검토의견

- 본 공원 결정 변경안은 양평근린공원 구역면적이 2017년 축소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상 양평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은 조성할 수 없는 시설이 됨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척하여 체육시설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현재 추진중인 실외골프연습장 시설 개선과 향후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